

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「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-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분	연장기간	해당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
- 「(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)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

- (대상) 중소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*을 보유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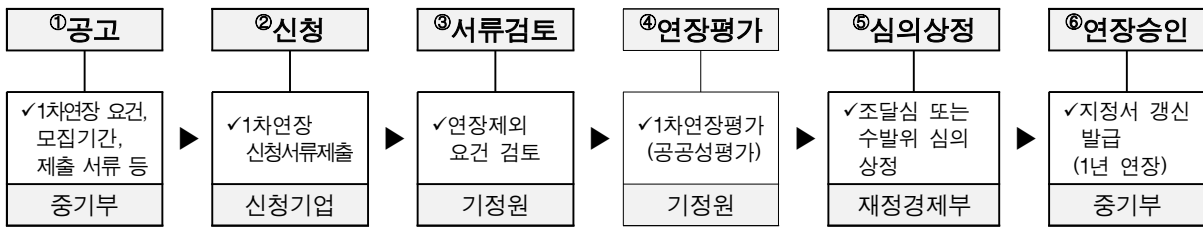
* (지정기간) '23. 7. 31. ~ '26. 7. 30.

- 다만,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
- 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- 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- 다.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- 라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구분	항목	세부내역
가	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	✓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나	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	✓ 적용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및 인증의 등록취소, 기간만료, 양도,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다	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	✓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라	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✓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이면서 동일 기술(특허, 실용신안)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○ (추진절차)



3 제출 서류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분	필수여부	비고		
1	신청서 (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)	필수	-		
2	개인정보 수집·조회 및 활용 동의서 (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)	필수	-		
3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필수	붙임1		
4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필수	붙임2		
5	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	납품실적목록(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)	해당시	붙임3
		3-2	구매계약서(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)	해당시	-
		3-3	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	해당시	-
		3-4	구매확약서	해당시	붙임4
6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필수	-		
7	기술인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*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**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)의 등록원부 등 첨부	필수			

○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※ www.smtech.go.kr 공고의 첨부파일(대상기업 목록 및 FAQ) 확인 필수
- ※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
- ※ ③~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을 업로드 (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)
- ※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

4 공공성 평가

- (공공성평가) 1차 연장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평가 수행
 - (평가방식) 정량평가(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)
 - (결과판정) 기본 지정기간(3년) 동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'적합'

<혁신제품 1차 연장 공공성 평가 적합 요건 세부내역>

가. 최초 지정기간(3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**물품식별번호를 확인**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**해외 공공기관** 조달 실적 증빙
(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·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)

나. 최초 지정기간(3년)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**물품식별번호를 확인**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**해외 공공기관**과의 계약 증빙

다. 최초 지정기간(3년)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
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중 **혁신제품과 관련하여** 시상·표창한 것을 혁신제품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

라.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최초 지정기간(3년) 내 공공기관의 **구매확약을 제시**하는 경우
-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

※ 라.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☞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**공사용 자재**로서,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**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**
- ☞ **FT3 혁신제품**이며,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**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**

5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**2026.5.28.(목) 18:00** 까지 접수 완료분
(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)
 - ※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
- 신청방법 : **③항에 따른** 신청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제출

구 분	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
접수방법	○ www.smtech.go.kr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기업주도형 → 지원사업 구분 '전체' 설정 → 과제신청대상 공고 → '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' 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

○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문의처
온라인 신청	온라인 접수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성과확산실)	연장평가	044-300-0712, 0714 (innopro@tipa.or.kr)

※ 신청 서식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

- 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◇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혁신제품 지정기간 (1차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법인번호		
	주 소	(□ -)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✓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)	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)	
	3	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		()	
	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		()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✓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		()	
	2	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(신청마감일 기준)			()	
	3	우수조달물품(혁신제품과 동일품목·동일기술)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		()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6 . . .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

[붙임3] 납품실적목록

※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(예 :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,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)에 한함

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

주)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[붙임5] 기술입증 자료목록

기술입증 자료목록

회사개요	회사명		사업자번호			
	주소	(□□ -)				
신청제품명						
물품식별번호						
목록	연번	구분	인증번호	기술의 명칭	유효기간	발급처
	1	특허	제0000-00호		2020.00.00 ~2040.00.00	특허청
	2					
	3					
	4					
	5					

※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(특허 등)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(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)

※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 기재

※ 혁신제품으로 지정(또는 연장)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(또는 연장기간)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, 권리,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, 이에 대한 허위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(회사명) :

대표 : (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